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설계자의 정의 신설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안 제2조제14호, 안 제67조 및 안 제175조)	8
2.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안 제67조의2 신설)	22
3. 설계자 산업재해 예방조치(안 제67조의3 신설)	25
4.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 강화 및 신분보장(안 제68조 및 안 제175조) ..	29
5. 부칙	35
※ 참고자료	37
1. 「건설안전특별법안」 과의 비교	37

I. 제안경위

2026년 6월 8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 나.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 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6항).
- 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 마.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 바.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8조).
-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 등 각 참여주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공사기간·공사비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 취지에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참여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바,¹⁾ 발주자·도급인의 수급인 안전관리 역량 확인,²⁾ 설계자의 적정 비용·기간 산정 및 안전시설물 설계 반영³⁾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유사한 측

1) 제21대 국회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자·수급인·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을 위한 공사기간·공사비용 산정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 반영 의무 등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761호)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안」으로 문진석의원안(2025. 6. 27. 발의, 의안번호 제2211151호; 2025. 9. 22. 발의, 제2213160호)과 윤종오의원안(2025. 12. 3. 발의, 제2214802호)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3일 공청회가 개최되었음.

2) 문진석의원안(의안번호 제2213160호)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②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문진석의원안(의안번호 제2213160호)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

면이 있음.

이에 따라 양 법률에서 발주자·설계자 등에 대하여 유사한 안전관리 의무가 중첩하여 규정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범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어떠한 법체계에 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양 법률 간 적용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중복·상충을 방지할지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개정안과 건설안전특별법안 주요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안 ⁴⁾
적정 공사기간 ·비용 산정 및 확인	- 발주자가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관계수급인이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과 비용 계상·설정 -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확인 (現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확대·변경)	-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사·감리자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과 비용 제공 - 발주자가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비용에 대한 심의·검토(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봄)
안전관리 역량 확인	- 발주자·건설공사도급인의 수급인 안전관리 역량 확인	- 발주자의 설계자·시공사·감리자 안전관리 역량 확인
설계자 의무	-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적정비용·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설계시 안전시설물 설계도서 반영	-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산정 - 안전관리 관련 정보 설계도서 반영 및 발주자 제공

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160호) 기준으로 작성

또한, 개정안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 강화를 위해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⁵⁾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며, 일부 규정은 현행 제도와의 관계, 제재 대상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와 설계자에게 권한과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부여하며,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며, 「건설안전특별법안」과 세부 내용에서 규율 대상·내용, 이행방법, 이행주체 등이 상이하여 의무가 상충되거나 중복 부과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내용이 「건설안전특별법안」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임에도 개정안이 개별산업인 건설업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는 측면이 있고,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산정 관련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⁶⁾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야 주무부처로서 관련 제도 운영을

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 6. 28., 일부개정]

6)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총괄하는 건설 관계 법령의 체계를 고려하여 공사비, 공사기간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자의 정의 신설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강화(안 제2조제14호, 제67조 및 제175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① 설계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②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발주자가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하며, ③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④ 건설공사발주자가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적정성 확인 결과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자·건설공사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⑥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도급계약 체결 전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⑦ 관련 제재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제67조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생략)

<신설>

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요청받은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여야 한다.

<삭 제>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

④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다만,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설계자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결과 안전보건대장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신 설>

<신 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 제67조제2항·제3항·제4항, 제68조제2항·제4항-----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7)는 ①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자 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③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7)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④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기간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관리 의무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건설공사발주자의 역할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최초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 확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등이 안전보건대장에 충실히 반영되고, 이를 적정하게 확인·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바, 개정안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자의 정의⁸⁾와 설계자·건설공사 수급인의

8)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안전보건대장의 제출 의무⁹⁾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비용·시간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수급인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등 각 의무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 9)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개정안	개정안 관련 현행법 및 하위규정
◦ 안 제2조제14호 (설계자 정의)	◦ 고시+일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추가	◦ 법: 미규정 ◦ 고시 제2조
◦ 안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1항) <u>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¹⁰⁾과 관계수급인</u> 을 고려한 적정 비용 및 기간 계상·설정	◦ (법 제3항) <u>설계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u> 을 고려한 적정 비용 및 기간 계상·설정
	◦ (제2항) 현행법 제1항과 동일 ※ 과태료(개정안 제175조)	◦ (법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관련 조치 ※ 과태료(현행법 제175조)
	◦ (제3항)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 ¹¹⁾ 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 과태료(개정안 제175조)	◦ 법: 미규정 ◦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설계자→발주자 제출), 제7조제1항 및 제2항(수급인→발주자 제출)
	◦ (제4항) 적정성 확인 대상 변경(<u>기본안전보건대장 제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건설공사 제외</u>) ◦ (제4항) 발주자→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 대한 <u>자료제출요구권</u> ※ 과태료(개정안 제175조)	◦ (법 제2항) 건설공사발주자의 적정성 확인 ※ 과태료(현행법 제175조) ◦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발주자·설계자·수급인→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u>자료제공 의무</u>
	◦ (제5항) 건설공사발주자의 적정성 확인 결과 필요한 경우 <u>개선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 의무</u>	◦ 법: 미규정 ◦ 고시 제6조제5항(발주자→설계자 개선 조치), 제7조제5항(발주자→수급인 보완 변경 요청)
	◦ (제6항) <u>도급계약 체결 전</u>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u>설계안전보건대장 사전제공</u>	◦ 법: 미규정 ◦ 고시 제6조제6항(수급인 선정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u>미리 고지</u> +계약 체결시 수급인 제공)

10) ‘건설공사도급인’은 현행법 제69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정안과 같이 제67조에서 처음 사용하려는 경우 정비가 필요해 보임.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11) ‘건설공사 수급인’은 현행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나, 현행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를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보고 있음. 이에 개정안 제67조제2항이 현행법 제67조제1항과 동일하다면, 개정안 제67조제3항 등에 따른 건설공사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문맥상 해석할 수 있어 보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과 현행법 시행령 제55조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설계자와 최초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로 규정하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모든 건설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에 ‘관계수급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확보하고, 하도급 단계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과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는바, 건설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면이 있어보임.

둘째, 적정성 확인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67조제2항¹²⁾은 기본·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2)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모두에 대하여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67조제4항에서는 그 대상을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정하여 이후 설계·시공단계 안전 보건대장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정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67조제4항은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¹³⁾

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3)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를 작성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적정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현행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이 각 단계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반영한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그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유해·위험요인 및 방지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안전보건대장과 작성체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 제67조제4항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적정성 등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7조제4항 위반 전체를 개정안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설계자 또는 수급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과태료가 종전¹⁴⁾과 같이 발주자의 적정성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부

14) 현행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

과되는 것인지, 설계자 또는 수급인의 자료 미제출까지 포함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주요내용¹⁵⁾에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 제67조의 의무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67조 제1항·제5항·제6항은 의무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로 규정하는 등 각 항별로 의무주체인 건설공사발주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표] 개정안의 의무 부담 주체 구분

구분	해당 항	주요 내용
모든 건설공사발주자	제1항, 제5항, 제6항	적정 비용·기간 계상·설정,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제2항, 제4항	안전보건대장 관련 조치,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특히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그 결과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15)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에 따른 개선조치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제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제5항·제6항은 모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는 의무 간 적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바, 각 항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안 제67조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성 확인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만을 거친 대장을 의미하는지, 제5항에 따른 개선조치까지 완료된 대장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도급계약 체결 전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 중 누구에게 어느 단계에서 제공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여섯째, 현행법 제67조제4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67조제7항은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외에도 “절차 및 적정성 검토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절차’가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적정성 확인에 관한 절차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앞선 조항에서는 ‘적정성 확인’으로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는 ‘적정성 검토’라

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임사항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마련·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발주자 등 관련 주체의 안전보건대장 제도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안 제67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7조의2(안전관리 역량 확인) ①</u>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②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건설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은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이에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수급인이 선정되어 산업재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 제61조¹⁶⁾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적격 수급인 선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 제67조의2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국가계약 과정에서 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 등을 일정 부분 심사한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16)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2조17)에 따른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바(종합심사낙찰제), 이러한 심사가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확인과 동일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인지,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 역량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은 같은 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인용조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도급계약 상대방 선정 요인에 안전관리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시공사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임.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안 제67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설계자가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6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7조의3(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설계자는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u> <u>② 설계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7조¹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 18)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발주자가 설계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6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86조19)는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시공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에 필요한 비용·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한 비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안전 및 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충실히 고려한 설계가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목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9)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3. 삭제 <2024.6.28>

4. 삭제 <2024.6.28>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삭제 <2024.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 제67조의3제1항의 경우 별도의 공사규모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설계자들이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한 산정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 제67조의3제2항은 설계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 적용대상인 구조물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시공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적정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착공 이후 시공사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설계자에게 안

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
임.

4.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 강화 및 신분보장(안 제68조 및 안 제175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가 ①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② 안전보건조정자가 작업의 혼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③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④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 등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을 이유로 안전보건조정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안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 ----- ----- ----- ----- -----

를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이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내용을 조정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개선·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작업 시기·내용 조정 요청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선임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u>제67조제1항·제2항</u> ,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 ----- ----- ----- --- <u>제67조제2항·제3항·제4항</u> , <u>제68조제2항·제4항</u> ----- ----- ----- ----- -----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8조²⁰⁾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구

20)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²¹⁾되어 있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사실의 고지 관련 사항과 조정업무를 법률상 권한과 의무로 명확히 하고, 조정 등 요청의 상대방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 및 신분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일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68조제2항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등 요청의무와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요청 준수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주요내용²²⁾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과태료 부과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68조제3항은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불응한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제도의 실효성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셋째, 개정안 제68조제4항은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 등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선임을 취소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지정·선임하는바, 건설공사도급인 등 발주자 외의 자가 그 지정·선임을 취소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 또는 지위에 있

22)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조치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
도록 시공사에게 개선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고, 시공사가 안전보
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임.

5.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후</u>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새로운 의무와 제재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수범자가 제도의 내용과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6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안 제175조제4항제3호의 과태료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관련 의무규정과 과태료 규정의 시행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개정안 제68조에 대한 적용례 규정인 개정안 부칙 제4조의 경우에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1조(시행일)의 본문에 규정된 시행일과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을 구분하여 명확히 지칭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바, ‘이 법 시행 후’를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정자는 이미 현재 법령에 따라 선임되어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 현장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이익 우려 없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는 부분은 법 시행 후 즉시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

「건설안전특별법안」과의 비교[문진석 의원안 기준]

- 발주자·설계자 등의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신설·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국토위 논의 중

* 문진석 의원안(25.6.27. / 25.9.22. 발의), 윤종오 의원안(25.12.3. 발의)

구 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규율 대상	시설물 품질 보장, 건설사고 예방 조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 분야는 제외(안 제3조)	사고성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발주자 의무	적정 공기·비용 제공(안 제8조제1항) *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형벌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도급계약 전 설계단계 중심 규율	적정 공기·비용 제공(안 제67조제1항) * 위반시 벌칙 無 * 現 제67조제3항 적용범위 확대(50억 이상 → 모든 공사) 및 조항 이동
	공사기간·비용 심의(안 제8조제2항) - (대상)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등 - (주체) 건설기술심의위 또는 지방정부 *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형벌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대장을 통한 자율 점검·개선 - 설계자의 공사기간·비용 산정 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안 제67조제4항) * 現 제67조제2항 구체화 및 항 이동 - 건설안전특별법안(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심의 시 의무 이행 간주
	설계 안전성 검토(안 제8조제6항) * 의무 위반 시 형벌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검토내용, 방법, 검토자 등 미정	가설구조물 설계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 검토 *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설계대장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이행(안 제67조제4항)

	설계·시공사 안전 역량 확인 (안 제9조) *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형벌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검토내용, 방법, 검토 주체 등 미정	시공사의 안전 역량 확인 *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평가, 안전보건공시 자료 확인 *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안전 역량 평가를 거쳐 입·낙찰자 선정 시 적용 예외
설계자 의무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걱정 공사기간·비용 산정 (안 제11조제1항) *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형벌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걱정 공사기간· 비용 산정 * 위반시 벌칙 無 * 「안전보건규칙」을 반영(추락방호망 등)한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공사기간·비용 산정
	시공 중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정보 발주자에게 제공 (안 제11조제2항) *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형벌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시공 중 예상 위험요인별 재해예방조치 마련 및 발주자에게 제공 * 걱정성 검토 후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도급 계약 전 제공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안 제24조제1항) *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형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설구조물의 역학적 안전 계산	가설구조물 설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규칙 적용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걱정성 검토
혼재 작업 관리	원청의 혼재작업 조정 (안 제15조제3항) * 원청이 하청의 혼재작업을 조정하고, 시공 계획서 작성 * 분리발주 등으로 복수의 원청이 있는 경우 원청 간 혼재작업 조정은 미해당	안전보건조정자의 혼재작업 조정 * 복수의 원청 간 혼재작업 발생 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마련·이행 확인

*자료: 고용노동부